

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

의회운영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2025. 4. 18.



의회운영위원회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의안번호: 제2643호
- 발 의 일: 2025년 3월 21일
- 발 의 자: 신달호 의원 등 3인
- 회부일자: 2025년 3월 31일
- 상정 및 의결: 2025년 4월 15일

2. 제안사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불가 규정 삭제(안 제15조제8항)
- 저연차 공무원 대상 새내기 도약휴가 규정 신설(안 제15조제11항)
-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(10일→20일(다태아 25일))(별표 5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-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
 - 안 제15조제8항에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도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여 업무 조율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으며,
 - 안 제15조제11항에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.
 - 또한, 별표5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, 다태아 출산 시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,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.
-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고,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특히, 육아기 공무원의 직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정에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. 아울러,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통해 공무원이 가족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- 결론적으로,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조직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